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22

발의연월일: 2020. 9. 24.

발 의 자:서영석·허종식·소병훈

인재근 · 강선우 · 이해식

김승원 • 문진석 • 박홍근

이정문 · 김경만 · 박상혁

조승래・설 훈・홍성국

윤준병 • 윤영덕 • 오영환

윤재갑 · 조정식 · 이원욱

정춘숙・도종환 의원

(239])

## 제안이유

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」를 고시하였고, 전국 2만 2,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%를 판매하였음.

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,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,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.

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,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

도화할 필요가 있음.

##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,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함(안 제2조제21호,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제1항).
- 나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,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,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2항·제3항, 제6조제3항및 제70조의3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"지정 방역용품"이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·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2항제10호 중 "약품 등의 비축"을 "의약품, 지정 방역용품 등의 비축 및 공급"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의료인"을 "보건의료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의료기관의 장"을 "의료기관의 장과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"로, "진단·관리·치료 등에"를 "진단, 관리, 치료, 지정 방역용품 공급 등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의료기관의 장"을 "의료기관의 장과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"로 한다.

②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는 지정 방역용품 공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.

제6조제3항 중 "권리가"를 "권리와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

을 권리가"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의2 중 "의약품·장비"를 "의약품·지정 방역용품·장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감염병 대비 지정 방역용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

제9조제2항제8호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, 지정 방역용품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의2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 및 지정 방역용품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

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4조제2항제3호 중 "의료기관"을 "의료기관 및 약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의료용품"을 "의료용품 및 지정 방역용품"으로 한다.

제40조의 제목 중 "의약품 및 장비"를 "의약품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, 지정 방역용품"으로 한다.

제40조의2의 제목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, 지정 방역용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생산한 의약품"을 "생산한 의약품, 지정 방역용품"으로 한다.

제40조의3제1항 중 "필요한 의약외품"을 "필요한 지정 방역용품을 비

롯한 의약외품"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"마스크 지급"을 "지정 방역용품 공급"으로 한다. 제70조의3의 제목 중 "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"를 "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"를 "조력한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"로 한다.

제79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"의료기관의 장"을 각각 "약사, 의료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20. (생 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1. "지정 방역용품"이란 제1급
	<u>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</u>
	·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
	약외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
	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① (생 략)	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	②
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	
야 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	10
위한 <u>약품 등의 비축</u>	의약품, 지정 방역용
	품 등의 비축 및 공급
11. ~ 17. (생 략)	11. ~ 17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 <u>의료인</u> 등의 책무와 권리)	제5조( <u>보건의료인</u> 등의 책무와
① (생 략)	권리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는
	지정 방역용품 공급으로 인하

- 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<u>의료기관의 장</u> 등은 감염병 환자의 <u>진단・관리・치료 등에</u>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.
- ③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<u>의료기관의 장</u>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 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제6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・

- ② (생략)
-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<u>권리가</u> 있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(생 략) 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

HL O 스 이디
<u>받을수 있다.</u>
<u>③</u>
의료기관의 장과 「약사
법」에 따른 약사진단,
관리, 치료, 지정 방역용품 공
급 등에
· ④
<u> </u>
법」에 따른 약사
제6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・
② (현행과 같음)
③
권리와 약
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
<u>받을</u> 권리가
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

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

- 의 수립 등) ① (생 략)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2의2. 감염병 대비 <u>의약품・장</u><u>비</u>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사항

<신 설>

- 3. ~ 6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- 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생 <sup>전</sup>략)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~ 7. (생략)
  - 8.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예방·치료 <u>의약품</u> 및 장 비 등의 사전 비축, 장기 구 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
  - 8의2. 제40조의2에 따른 <u>의약품</u>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 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

②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 <u>의약품·</u>
지정 방역용품・장비
2의3. 감염병 대비 지정 방역용
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
3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세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1. ~ 7. (현행과 같음)
8
의약품, 지정 방역
<u>용 품</u>
8의2의약품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<u>및 지정 방역용품</u>

의 수립 등) ① (형행과 같음)

- 9. ~ 11. (생 략)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저 략)
  -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,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3. ~ 6. (생 략)

- ③ ④ (생 략)
-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④ ~ ⑥ (생 략)

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

세10조(위원회의	구성)	1	(현행
과 같음)			
2			

9. ~ 11. (현행과 같음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
- 4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 - ④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 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-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, 시설,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
- 4. <u>의료용품</u>의 비축방안 및 조 달방안
- 5. 6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제40조(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<u>의약품 및 장비</u>의 비축)
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·치료 <u>의약</u> 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.
  - ②·③ (생 략)
- 제40조의2(감염병 대비 <u>의약품</u>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)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 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

2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~l ¬ ¬l ¬l ¬l ∧l ¬
의료기관 및 약국
4 이근요프 미 기저 바여요프
4. <u>의료용품 및 지정 방역용품</u> 
5.·6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40조(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
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) ①
-의약품, 지정 방역용품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0조의2(감염병 대비 <u>의약품</u> ,
지정 방역용품 공급의 우선순
위 등 분배기준)

유형	행에	대비	하여	저	]40조	스제1	항
및	제2	항에	प्पिर	1	비축	하거	니
생 /	산한	의약	:苦	공급	의	우선	순
위	등	분배기	기준,	コ	밖여	] 필	요
한	사힝	을 유	비원호	리의	심으	를	거
쳐	정할	· 수	있다.				

제40조의3(수출금지 등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・방역 및 치 료에 필요한 의약외품,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(이하 "의약외품등"이라 한 다)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 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.

## ② (생 략)

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

	<u>스</u> 정	 생산한 	의약품, 방역·	
제	 ]40조의3(수출; 	금지 	등)	①
	<u>방역용품을</u>	_		
제	 ② (현행과 같 ]49조의2(감염 <sup>‡</sup>		출의 :	
	조치) 			

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"감염취약계층"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다.

#### ② (생략)

제70조의3(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.

## ② (생략)

제79조의4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	33
	<u>지정</u>
	방역용품 공급
	② (현행과 같음)
الد	
<u>^</u>	70조의3(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
	<u>자 또는 약사</u> 에 대한 재정적
	지원)
	조력한 의료인, 의
	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
	② (현행과 같음)
제	79조의4(벌칙)

1.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
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
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
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
고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
군의관, <u>의료기관의 장</u> 또는
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

2	. 제	1급	감악	겸 병	및	저	2=	감감	염	병
	에	대	하여	저	113	조이	1) 1	다른	<u>-</u>	의
	사,	ふ	과의	나사,	한	의	<b>나</b> ,	군.	의	란,
	의 3	是フ	관의	의 건	<u> </u>	E는	- <b>근</b>	남염	병	병
	원기	भी	확인	인기	관으	] .	장의	븨	보	고
	华号	= ,	시 고	릌	밧ㅎ	비항	- ズ	<b>Լ</b>		

1.				
-				
-				
-				
-				
-	<u></u> 약사,	의료기:	관의	장
-				
-				
2.				
	약	사, 의료	기관의	장